

Q. 어떠한 시설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 대상 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에 아래와 같이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Q. 어떠한 경우에 유도등 설비 접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각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금속체)에 접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금속체가 노출되지 않고 플라스틱 등 절연체 외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방지용 접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유도등의 경우 절연체 외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소방시설점검 중 접지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시설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경우 그 금속체의 외함을 제3종 접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33조에 접지 면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접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체 감전 방지를 위하여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경우(소방펌프, 분전반 등) 제3종 접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 지하 1층 지하주차장내 중앙감시실 및 펌프실의 경우 용도별 방화구획으로 보아 별도의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제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에 따라 주차장은 다른 용도(중앙감시실, 펌프실)와는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Q. 신축창고 캐노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일반적인 창고의 캐노피의 경우 건축면적에 일부 산입이 되며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부분으로 해당 캐노피의 사용용도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 및 도면을 가지고 해당 건축물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면적(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관련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 바닥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